

國民福祉年金制度 施行을 위한 政策方案

閱 載 成

▷ 目 次 ◁

- I. 序 論
- II. 制度의 性格과 內容
- III. 問題點과 政策代案
- IV. 關聯制度와의 調整
- V. 結論 및 建議

I. 序 論

우리나라의 現行 所得保障制度는 1960年の 公務員年金法을 嚆矢로 1963년에 軍人年金法, 1975년에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이 導入·實施中에 있으며, 이 이외에도 産業災害補償保險法(1963)과 醫療保險法(1963年制定, 1977年 改正實施) 등이 現金給付의 部分的 所得保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公的 扶助의 所得保障制度는 生活保護法(1961), 軍事援護報償法(1961), 災害救護法

(1962), 國家有功者 등 特別援護法(1962) 및 自活指導事業에 관한 臨時措置法(1968) 등이 中央政府의 一般會計豫算과 地方費를 財源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1973년에 制定된 國民福祉年金法은 3次에 걸친 實施延期로 7年이상 經過된 현재 까지도 保留되고 있는 상태이다.

社會保障의 2大機能部門 중의 하나인 醫療保障은 1977년부터 醫療保險制度가 本格化되면서 1981年 현재 100人이상 事業場勤勞者, 公務員 및 敎職員과 一部 地域住民까지 적용함으로써 全人口의 27.2%(10,571千名)에 달하고 있으며, 醫療保護事業도 3,728千名에게 실시되어 總醫療保障適用對象은 全國民의 36.8%에 달하고 있다¹⁾. 그러나 다른 하나의 部門인 所得保障은 3個公的 年金(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員年金)의 911千名(人口對比 2.3%), 公的 扶助의 生活保護對象者와 援護對象者를 포함하여 2,220千名(人口對比 5.7%)으로 全國民의 8.0%에 불과한 실정이다.

政府는 80年代 福祉政策의 하나로 全國民을

筆者: 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閱載成, 「社會保障」,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韓國開發研究院, 1981, p 529.

대상으로한 所得保障制度로서 國民福祉年金法을 施行하려고 計劃하고 있다. 그러나 制度가 樹立될 當時와 現段階의 社會·經濟的 狀況이 크게 변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補完 혹은 修正作業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國民福祉年金法의 性格과 內容, 制度實施를 前提로 한 制度內的 問題點과 그 政策代案을 提示하고 他制度와의 關係 등을 研究·分析하여 政府의 政策形成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Ⅱ. 制度의 性格과 內容

1973년에 制定된 國民福祉年金法은 年金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같이 國家에서 직접 管掌하는 公的 年金制度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社會保障制度의 發展初期段階이고 國家財政의 制約으로 國民의 最低生活을 保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國民의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勤勞者를 1種, 自營業者와 農·漁民 및 一般住民 등을 2種으로하여 그들의 老齡, 廢疾 또는 死亡時에 最低生活을 保障할 수 있도록 制度가 마련되었다.

이 制度는 長期的 年金保險制度로서 對象者를 強制適用하며, 私保險制度와는 달리 個人의 欲求(needs)나 拂入한 總額(contributions)과는 직접적으로 關係가 없이 年金額이 給與되는 社會保險制度이다. 즉, 年金額은 法定의 年金算定基準에 의해서만 支給된다. 算定基準에는 基本年金額과 加給年金額을 合算하도록 되어 있으며, 基本年金額의 均等部分과 報酬

比例部分은 所得再分配와 最終3年間の 所得水準을 反映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年金額의 實質價值를 유지하기 위하여 賃金水準이나 物價의 變動이 있을 때에는 制度的으로 調整하고 있다.

財源은 使用者·被傭者·政府의 3者負擔을 원칙으로 하되 2種의 경우 使用者가 없기 때문에 本人과 政府의 補助金에 의해서 調達되도록 하였고, 이와 아울러 年金財政의 運營은 保險數理의 計算方法을 활용하여 收支均衡을 유지하도록 附隨的으로 基金管理法을 制度化하였다.

給與의 種類로는 年金과 返還一時金으로 구분하여 年金에는 老齡年金(完全老齡年金, 減額老齡年金, 在職者老齡年金 및 特例老齡年金), 障害年金(3等級), 遺族年金(3個形態)이 설치되어 있으며, 年金을 支給할 수 없는 中途脫落者를 위하여 返還一時金制度가 있다. 특히 女性의 경우에는 社會的 脆弱點을 감안하여 男性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惠澤을 주고 있다.

行政組織은 保健社會部와 國稅廳으로 2元化되고 있으며, 制度의 管掌責任은 保健社會部長官이 맡고 있다.

Ⅲ. 問題點과 政策代案

1. 加入對象

가. 加入制限年齡(18歲)

加入對象者 중 18歲 이상만을 적용하는 加入

制限年齡은 加入對象者의 年齡分布, 經濟狀態, 受給時까지의 期間 및 女性의 地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980年의 우리나라 事業場勤勞者는 322萬名이나 이 중 18歲 미만의 勤勞者는 2.8%에 해당되고 18~19歲의 勤勞者가 12.3%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또 同一年齡(14~19歲)의 經濟活動人口에 대한 勤勞者의 比率는 39.3%로서 全體平均의 22.3%보다 높다(表 1 참조). 그런데 全體勤勞者의 性比(男子:女子)는 63:37인데 비해 18歲미만은 20:80, 18~19歲는 28:72, 20~24歲는 39:61로서 24歲 이하에서는 女性勤勞者가 훨씬 많다. 즉, 全女性勤勞者의 75.4%가 24歲이하의 勤勞者이

며 25歲이상은 24.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男子는 大學進學이나 軍入隊 등으로 18~24歲 年齡階層에서의 就業率이 낮아지기 때문이며, 女性은 25歲이후 結婚으로 인한 離職率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年少勤勞者의 賃金水準은 全勤勞者 平均賃金의 50%정도로서 所得水準이 낮고²⁾, 또 老齡年金受給年齡이 60歲이므로 加入期間이 최고 42年이나 된다. 이와 같이 賃金水準이 낮고 加入期間이 길며, 女性의 早期退職率이 높은 것은 年少勤勞者의 적용에 不利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早期加入이 필요한 것은 加入者의 不意의 障害나 死亡 등에 年金惠澤이 주어지므로 이들의 生活保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年少階層을 排除할 경우 業務上災害는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어느 정도 所得保障을 받을 수 있으나 業務外의 事故 등이나 2種加入者의 所得保障手段은 不充分하기 때문에 이들의 適用排除는 國家·社會發展에도 沮害要因이 될 수 있다.

또 西歐諸國의 年金制度에도 加入年齡을 制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만 自營業者나 農·漁民 등의 地域住民에 대해서는 經濟活動參與年齡을 기준하여 加入年齡을 制限하고 있다³⁾. 따라서 事業場勤勞者(1種)와 自營者 및 地域住民(2種)을 모두 18歲이상으로 制限하고 있는 現制度를 分離하여 1種은 適用事業場의 規模에 따라 加入시키고, 2種은 그들의 所得能力과 學制 등을 감안 勤勞基準法의 保護年齡인 14歲이상을 加入對象으로 하였으면 한다. 다만 學生이나 軍服務者는 例外規定으로 除外함이 妥當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老齡年金受給年齡 및 60歲 이상 者의 適用

〈表 1〉 事業體勤勞者分布(1980)

(단위: 千名, %)

	經濟活動人口(A)	5人 이상 勤勞者數			B/A
		男	女	計 (B)	
17歲이하	1,236 ¹⁾	18	73	91(2.8)	39.3 ³⁾
18~19		111	284	395(12.3)	
20~24	1,971	342	532	874(27.1)	44.3
25~29	1,846	520	121	641(19.9)	34.7
30~39	3,597	630	95	725(22.5)	20.2
40~49	3,279	314	59	373(11.6)	11.4
50~59	1,808	97	13	110(3.4)	6.1
60歲이상	719	10	1	11(0.4)	1.5
計	14,454	2,042	1,178	3,220(100.0)	22.3

註: 1) 14~19歲의 經濟活動人口와 이에 對한 比率임.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勞動廳, 『事業體勞動實態調查報告書』, 1980.

2) 1980.4 현재 全勤勞者 平均賃金은 150.7千원이나 17歲 미만 勤勞者의 平均賃金은 66.6千원(44.2%), 18~19歲 勤勞者는 77.3千원(51.3%), 20~24歲 勤勞者는 96.3千원(63.0%)에 해당되고 25歲이상은 平均賃金을 上廻하고 있다(勞動廳, 『職種別 賃金實態 調查報告書』, 1980).

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C.: May 1980.

〈表 2〉 停年企業¹⁾의 停年年齡分布

(단위: %)

停年年齡 (歲)	一律停年制 企業 ²⁾	性別 停年制 企業 ³⁾	
		男 子	女 子
30	—	—	8.6
40	—	—	19.0
45	—	2.0 ⁴⁾	19.0 ⁵⁾
50	10.4 ⁶⁾	8.0	31.0
55	79.2	70.0	10.3
60	10.4 ⁷⁾	20.0	—
結婚時	—	—	12.1
計	100.0	100.0	100.0

註: 1) 100人以上 事業體中 525個所의 停年企業體를 對象으로 한 調査結果임.

2) 231個 企業體의 分布임.

3) 96個 企業體의 分布임.

4) 48歲 停年企業임.

5) 47歲 停年企業(1.7%) 포함.

6) 52歲 停年企業(1.3%) 포함.

7) 61歲 停年企業(1.3%) 포함.

資料: 韓國經營者協會, 『企業停年制의 現況』, 1979, pp.19~23.

除外.

年金受給資格年齡을 60歲 (女子와 特殊職者는 55歲)로 규정하고 있으나 老齡年金은 退職後의 老後生活을 保障하는 制度인 만큼 停年年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停年退職年齡은 〈表 2〉에서와 같이 企業의 79.2%가 55歲로 정하고 있으며, 50歲 및 60歲가 각각 9.1%씩 되어 있다. 그리고 男子의 停年年齡은 55歲가 가장 많고, 女子의 경우는 50歲 停年이 제일 많으나 30歲停年과 結婚과 同時退職시키는 企業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⁴⁾.

따라서 60歲에 老齡年金을 支給할 경우 55歲 停年退職後 5年동안의 生活保障手段이 困難하게 된다. 그러나 經濟가 成長하고 勞動參

〈表 3〉 一般年金制度의 通常受給資格年齡에 따른 國家數

通常受給 年齡(歲)	男 子			女 子		
	A	B	C	A	B	C
67	4	—	—	4	—	—
65	15	7	10	7	3	6
62	1	—	—	2	—	—
61	1	—	—	—	—	—
60	9	21	7	8	12	9
57	—	1	—	2	1	—
55	—	9	5	7	20	6
50	—	1	—	—	3	1
計	30	39	22	30	39	22

註: A; 유럽 및 北美國家

B; 1966年 이전의 諸國家

C; 1966年 이후의 新生國家

資料: ISSA, *Gradual Transition from Full-Time Work to Retirement, with Income Deriving in Part from Work and in Part from a Reduced Pension*,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IX, Geneva, 1978, pp.15~17.

加의 機會가 擴大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現在의 停年年齡은 60歲 이상으로 延長될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外國의 老齡年金受給資格年齡을 보면 〈表 3〉과 같이 50~67歲로 多樣하나 男子의 경우 60歲가 40.7%로 가장 많고 女子는 55歲가 36.3%로 가장 많다⁵⁾.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停年年齡이나 平均餘命 및 個人의 年金收益面으로 보아 現水準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分析된다.

制度가 실시될 당시 55歲를 초과한 者에 대하여는 加入年齡의 上限制限으로 制度에서 除外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制度가 없어 保險料를 積立할 機會가 없었기 때문에 年金惠澤을 賦與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制度는 社會保險制度로서 長期的으로는 全國民의 加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給付額水準은 작

4) 韓國經營者協會, 『企業停年制의 現況』, 1979, pp.19~23.

5) 先進國의 경우는 男子 65歲, 女子 60歲가 제일 많다.

더라도 이들을 위한 年金支給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日本의 경우에도 制度施行初期에는 無釐出福祉年金이라는 特別制度로서 拂入期間이나 納入金에 관계없이 一定額의 年金을 經過規程으로 設置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문제는 制度實施初期이거나 國家財政이 不充分한 때에는 受給資格年齡을 70歲이상으로 上向調整하거나 最低生計費를 充當할 수 있는 범위로 給付額水準을 下向調整하는 方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制度에서는 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에게만 加入資格을 限定함으로써 國外居住國民이나 國內居住外國人是 對象에서 除外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國外居住勤勞者나 事業場勤務外國人을 제외한 國內居住外國人에게 문제가 된다⁷⁾. 그러나 대부분의 國家는 國家間의 相互協定이 없으면 外國人을 受惠對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先進諸國에서는 이를 相互協定으로 締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相互協定時 加入시킬 수 있는 條項을 삽입함이 타당하며, 海外勤勞者의 年金受給權을 확보하기 위해 國內居住國民이란 단서를 國民으로 改正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適用事業場의 規模와 低所得者의 加入制限

이 法의 施行令에서는 30人이상 事業體에 適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80年현재 5人이

〈表 4〉 事業體規模別 勤勞者 및 平均賃金の 分布 (1980)

(단위: %)

事業體規模 (人)	勤勞者構成比			平均賃金에 대한比率		
	男	女	計	男	女	計
5~9	7.8	7.4	7.6	—	—	—
10~15	4.6	3.4	4.1	93.4	105.7	101.4
16~29	7.3	5.4	6.6	93.4	105.7	101.4
30~99	20.6	17.4	19.4	94.4	102.3	97.0
100~299	19.2	21.0	19.8	101.8	98.8	100.8
300~499	8.4	9.5	8.8	106.4	98.5	103.6
500 이상	32.2	35.9	33.6	103.6	98.4	100.2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勞働廳, 『事業體勞働實態調査報告書』, 1980.
勞働廳,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상 事業體勤勞者 322萬名 中 30人이상 事業體勤勞者는 263萬名으로 8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30人미만의 事業體勤勞者인 18.7%만 加入對象에서 除外한다는 것은 事業體規模에 따른 平均賃金の 隔差가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特別한 意味가 없게 된다(表 4 참조). 더욱이 16人이상의 事業場⁸⁾은 勞働部에서 實施하는 產災保險適用事業場과 類似하므로 適用事業場의 파악이나 加入者登錄과 徵收業務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勞動力의 移動이나 就業期間을 감안하더라도 1種의 경우는 一律적으로 16人이상 全事業體에 適用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그러나 給與, 徵收, 審査業務 등을 포함한 制度運營體系가 완전히 整備되지 않고 있으며, 醫療保險의 制度運營도 100人이상 事業體에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制度實施初期에는 實施 가능한 事業場勤勞者로부터 시작하여 行政管理機構가 組織·強化되는 대로 段階적으로 全國民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低所得勤勞者의 保險料負擔을 덜어주

6)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厚生の指標(特集號)』, 第26卷 第13號, 1979, pp.143~146.

7) 適用事業場에 사용되고 있는 外國人은 그 申請에 따라 第1種加入者로 될 수 있다(法 第111條).

8) 16人이상 事業場이외에도 5人 이상의 事業場中 鑛業과 製造業中 化學, 石油, 石炭, 고무·플라스틱製品製造業이 適用되고 있음.

고 年金財政을 保護하기 위해 月報酬 15,000원 이하 者는 強制適用에서 除外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現行 賃金構造上 現實性이 없으며, 이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社會保險制度的 意義를 상실할 염려가 있다. 즉, 低所得者에게는 釀出料를 免除하더라도 制度에 加入시켜야 所得再分配의 惠澤을 받을 수 있으며, 障害나 死亡時에 年金을 받을 수 있으므로 適用事業場 勤勞者에게는 加入年齡이나 所得의 制限없이 加入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1980년 현재 全勤勞者中 平均報酬 이하 勤勞者가 63.2%를 차지하고⁹⁾, 甲種勤勞所得稅의 免稅者가 75.2%¹⁰⁾에 이르고 있어 低所得勤勞者를 정하기 위한 報酬의 下限設定에는 많은 隘路點이 있다. 또 低所得勤勞者가 任意加入한 경우 國庫에서 寄與金의 一部(1%)를 釀出하게 되어 있으나 國家財政의 制約으로 이의 補助가 順調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事業體勤勞者는 全部를 加入시키고 釀出料도 가능한 限 勞·使의 兩者負擔으로 納入토록 하되 低所得勤勞者의 寄與金은 使用者가 負擔할 수 있도록 制度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特殊職種勤勞者의 受給資格年齡

現制度에 의하면 乘船船員, 坑內鑛夫, 塔乘航空乘務員에게는 女子와 동일하게 55歲에 老

齡年金을 受給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의 從事期間은 全年金加入期間의 4/5 이상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女性의 경우와 달리 이들에게 年金受給資格을 早期에 獲得토록한 것은 肉體勤勞者로서 他職種者보다 退職年齡이 짧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나¹¹⁾ 其他職種의 停年退職年齡도 55歲가 대부분인 현재로서는 특별한 意義가 없다. 더욱이 特殊職種者에 대한 制度를 별도로 制度化하고 있는 國家¹²⁾들과는 달리 全國民을 대상으로한 綜合的인 制度를 導入하고 있는 이상 受給資格年齡으로 惠澤을 주는 문제는 加급적 制限하여야 하며, 坑內夫와 같이 특별한 職種에 대하여는 坑內夫로서의 從事期間, 身體檢査結果 등이 受給資格要件에 追加되어야 한다. 그러나 塔乘航空乘務員 등은 비교적 所得水準이 높고 退職年齡의 制約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혜택을 주는 國家도 없다. 따라서 年金財政의 保護를 위해서도 制度施行初期에는 이들은 除外시키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보인다.

2. 被保險對象者의 損益分析

1973년에 制定된 國民福祉年金法(66條 및 67條)에는 1種加入者의 釀出料는 標準報酬의 5~7%로 하고, 이중 3~4%는 使用者가, 2~3%는 加入者가 負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種加入者에게는 月 900원이상을 定額으로 釀出토록 하고 그 釀出料率과 釀出額은 施行令에 委任하고 있다. 그러나 釀出料의 決定은 加入者나 使用者의 負擔能力, 加入者의 損益分析結果, 年金財政 및 物價·貯蓄 등 國民經濟的 側面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9) 勞動廳,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0.

10) 韓國開發研究院, 『第5次 5個年計劃 作成을 위한 經濟社會政策協議會: 討議資料 및 內容』, 財政部門, 1980. 9, p. 567.

11) 事故危險도가 높다는 理由는 障害 및 遺族年金의 支給事由에 해당되므로 證明力이 없음.

12)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은 年金制度를 特殊職種別로 分立體系로 운영하고 있다.

같은 決定要因 중에서도 加入者의 損益分析은 國民의 關心이 至大하고, 加入者의 年金參與意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本論文에서는 몇가지 假定을 前提로 釀出料率決定要因가운데 主要한 構成部分인 加入者의 損益을 分析하려고 한다.

1種加入者의 釀出料率은 老齡年金을 基準으로 年金加入期間동안의 利子를 감안한 納入釀出料總額과 生殘期間동안 受給할 老齡年金期待價値가 적어도 동일하도록 決定되는 것을 前提로 할 것이다. 納入釀出料總額(NWT)은 다음 式으로 算出할 수 있다.

$$NWT = \sum_{j=1}^n PT_j (1+i)^{n-j}$$

$$PT_j = 12 \cdot k \cdot WG_j = 12 \cdot k \cdot WG_1 \cdot (1+\hat{r})^{j-1}$$

여기서, NWT: 加入期間동안의 納入釀出料의 元利金合計

PT_j: 加入後 j年째의 年間釀出料納入額

WG_j: 加入 j年後의 加入者의 月報酬

n: 年金加入期間(年)

i: 年間利子率

\hat{r} : 加入者의 年間賃金引上率

k: 釀出料率

그리고 老齡年金期待價値 즉, 年金受給期間 동안 受給할 總年金額의 最初受給當時의 現價는 다음과 같다.

$$NWB = \sum_{l=0}^{m-1} 12 \cdot PE_0 \cdot PX_l (1+R)^l / (1+i)^l$$

여기서, NWB: 受給할 年金總額의 最初受給當時의 現價

PE₀: 最初年金受給月額

m: 年金受給期間(즉, 年金受給當時에서의 平均餘命)

PX_l: 年金受給 l年째의 生殘確率

R: 年金受給額 年間引上率

上記式을 이용하여 加入者의 損益分岐點, 즉, NWT와 NWB가 동일하게 되는 釀出料率(k)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k = \frac{PE_0 \sum_{l=0}^{m-1} PX_l \cdot (1+R)^l / (1+i)^l}{WG_1 \sum_{j=1}^n (1+\hat{r})^{j-1} (1+i)^{n-j}}$$

이 경우 加入者의 報酬에 따라 年金額에 差異가 있기 때문에 加入者의 報酬가 全加入者의 平均報酬와 동일한 경우에만 限定하고¹³⁾, 利子率(i), 平均賃金引上率(r), 加入者個人의 賃金引上率(\hat{r})¹⁴⁾ 및 年金額引上率(R) 등은 몇가지 경우로 假定하였다. 즉, 年間利子率은 銀行定期預金의 金利를 基準하여 18%와 20%의 2가지 경우를 가정하고¹⁵⁾, 全體加入者의 平均賃金引上率(r)과 加入者個人의 賃金引上率(\hat{r})은 10~20% 및 10~25% 범위에서 각각 설정하였으며¹⁶⁾, 年金額引上率(R)은 全勤勞者의 平均賃金引上率(r)과 동일하게 調整할 경우로 限定하였다. 그리고 年金加入期間(n)은 最少老齡年金受給資格期間인 20年加入者와 30年加

13) 年金額은 均等部分과 報酬比例部分으로 構成되므로 加入者의 報酬水準(WG)에 따라 年金額(PE)에 差異가 생기게 되어 加入者全體의 平均報酬(W)와 加入者의 報酬가 같은 경우만을 對象으로 比較하였다.

14) 加入者個人의 賃金引上率(\hat{r})은 全體加入者의 平均賃金引上率(r)에 비해 昇進, 昇給 등에 의한 引上率이 감안되어야 하므로 別途로 취급하였다.

15) 1969~81年間の 平均金利(1年滿期定期預金) 18.4%와 1981年 4月 현재 金利 19.5%를 감안한 것임(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0, p.135).

16) 1969~79年間の 平均名目賃金引上率은 26.3%(範圍 11.6~35.5%)였으나 앞으로의 賃金引上 抑制政策을 감안 10~20%로 假定하였으며, 個人賃金引上率은 平均賃金引上率보다 5% 높은 경우도 고려하였다.

〈表 5〉 加入者¹⁾의 損益分岐點(k)

(단위 : %)

利率 (i)	賃金引上 率(r) 및 年金引上 率(R)	加入者 賃金引 上率(f)	加入期間20年		加入期間30年	
			男子 ²⁾	女子 ³⁾	男子 ²⁾	女子 ³⁾
18	10	10	6.24	9.74	4.04	6.31
		15	6.97	10.88	6.51	10.17
	15	15	12.50	22.65	10.93	19.81
		20	12.94	23.45	14.92	27.04
		20	23.48	51.59	25.45	55.91
20	10	10	4.21	7.05	2.39	4.00
		15	4.82	8.06	4.05	6.78
	15	15	9.58	16.32	7.52	12.81
		20	10.15	17.29	10.83	18.45
		20	18.25	36.93	18.29	37.01
		25	18.10	36.62	22.61	45.75

註 : 1) 加入者賃金(WG)이 全體加入者의 平均賃金(W)과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됨.

2) 男子의 60歲의 平均餘命은 13年임(m=13).

3) 女子의 55歲의 平均餘命은 23年임(m=23).

入者인 경우를 比較하고, 年金受給期間(m)은 男子 13年, 女子 23年으로 하고 生殘確率(PX)은 生命表를 利用하였다¹⁷⁾.

이러한 假定을 前提로 被保險者의 損益分岐點을 算出한 결과는 〈表 5〉와 같다. 즉, 利率이나 賃金引上率에 따라 損益分岐點은 큰 差異를 보이고, 男女間에도 큰 差異가 나타난다. 그리고 年金加入期間에 따라서도 損益分岐點은 相異하게 된다. 결국 賃金引上率이 높아지면 損益分岐點도 높아지게 되며, 年金加

入期間에 따라서는 賃金引上率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女子는 平均餘命이 길고 受給年齡이 男子보다 낮아 損益分岐點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被保險者의 立場에서 본 釀出料率은 男子를 基準으로 하여 賃金引上과 利率의 變動을 감안하여 調整되어야 하나, 現在의 20%의 利率과 賃金引上率을 10%로 統制할 경우, 20年加入者 基準으로 4.2%이하의 釀出料率을 策定할 수 있다. 그러나 年金加入期間이 길면, 즉 30年加入者를 基準으로 할 때에는 2.4%가 損益分岐點이 될 수 있다. 그런데 一般的인 釀出料率에는 個人寄與金뿐아니라 使用者負擔分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加入者個人的 寄與金만으로서의 損益分岐點을 고려하면 이의 2倍까지도 釀出料率로 設定할 수 있게 된다¹⁸⁾. 그러므로 30年加入者도 4%이하의 수준에서 釀出料率이 결정된다 하여도 加入者에게 損害를 주지 않게 된다.

그러나 釀出料率을 個人的 損益分析結果만으로 決定할 경우 年金財政과 負擔能力의 問題가 惹起되기 때문에 加入者의 便益을 保障하면서도 年金財政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平均賃金加入者를 基準으로 하여 分析한 결과에 따라 損益分岐點의 釀出料率을 유지하면서 年金財政에도 影響이 없고¹⁹⁾, 企業이나 被傭者의 負擔能力에도 影響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3~4% 수준에서 釀出料率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만약 이 3~4%수준에서 釀出料率이 결정될 경우와 現행 최저수준인 5%로 결정될 경우, 加入者의 收益率(NWB/NWT)를 비교하면 〈表 6〉과 같이 나타난다.

17) 1970年과 1979年의 生命表(經濟企劃院, 「1978~1979年 韓國人의 生命表」, 1980)를 이용 20年後인 2000年의 生命表를 換算한 결과 男子 60歲의 平均餘命이 13年, 女子 55歲의 平均餘命은 23年으로 나타났으며, 生殘確率은 各 年齡別 死亡確率로써 算出하였다.

18) 그러나 使用者負擔分은 勤勞者의 勤勞條件의 一部로 看做되므로 加入勤勞者가 負擔하는 것을 基準으로 釀出料全部를 加入者가 負擔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19) 保健社會部의 國民福祉年金財政推計에 의하면 2005年에 賦課方式에 의한 釀出料率을 2.1%로 算出하고 있다.

〈表 6〉 年金保險加入者¹⁾의 收益率

(단위 : %)

利率率	賃金上率	加入者賃金上率	釀出料率 3.5%인 경우 ²⁾				釀出料率 5.0%인 경우			
			加入期間 20年		加入期間 30年		加入期間 20年		加入期間 30年	
			男子	女子	男子	女子	男子	女子	男子	女子
18	10	10	178	278	115	180	125	195	81	126
		15	199	311	186	291	139	218	130	203
	15	15	357	647	312	566	250	453	219	396
		20	370	670	426	773	259	469	298	541
		25	651	1,474	855	1,597	470	1,032	509	1,118
20	10	10	120	201	68	114	84	141	48	80
		15	138	230	116	194	96	161	81	136
	15	15	274	466	215	366	192	326	150	256
		20	290	494	309	527	203	346	217	369
		25	521	1,055	523	1,057	365	739	366	740
		25	517	1,046	646	1,307	362	732	452	915

註 : 1) 加入者賃금이全體加入者의 平均賃金과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됨.

2) 釀出料率을 個人의 損益分岐點으로 計算했을 경우 3~4% 수준이 되나 여기서는 平均値인 3.5%로 看做하였음.

3. 年金額水準

가. 基本年金額

年金受給權者에게支給되는年金額은 個人의報酬와 加入期間에 따라支給되는 基本年金額과 扶養家族數에 의한 加給年金額으로 결정된다. 基本年金額은 全加入者의 平均報酬月額을 基準으로 計算되는 均等部分(MSP)과 加入者個人의 報酬(所得)月額을 基準으로 計算하는 報酬比例部分(BSP)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年金額決定의 基準으로 삼고 있다. 즉, 1種加入者의 月基本年金額(PE)의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

$$PE = MSP + BSP$$

$$MSP = 0.2MS$$

$$BSP = \{4n(n+5)/10,000\} \cdot BS$$

여기서, MS : 全 1種加入者의 年金受給前年度

의 平均報酬月額

BS : 加入期間中 最終3年間の 加入者 平均標準報酬月額

n : 加入年數(n ≥ 20)

基本年金의 水準을 알기위해서 加入者의 最終3年間 平均標準報酬月額(BS)에 대한 比率을 分析할 필요가 있다. 年金加入當時의 全勤勞者平均報酬月額을 W_1 이라하면 n年加入後의 MS는 W_{n-1} 과 동일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賃金上昇率(r)에 따라 변하게 되어 $MS_n = W_1(1+r)^{n-1}$ 로 計算된다. 또 BS는 加入者個人의 平均報酬月額(WG)에 따라 결정되므로 個人의 賃金上率(f)을 적용하여 受給前의 最終3年間平均報酬月額을 計算할 수 있다.

$$BS_n = WG_1 \{1+f\}^{n-1} + (1+f)^{n-2} + (1+f)^{n-3} / 3$$

그리고 (PE/BS)는 (MSP/BS) + (BSP/BS)

로 計算되므로 여기서 (BSP/BS)는 $4n(n+5)/10,000$ 으로 加入年數에 의해서 決定된다. 그러므로 均等部分比率 즉, (MSP/BS)가 年金額水準(PE/BS)을 결정하게 된다.

報酬比例部分(BSP)의 最終3年間平均報酬月額(BS)에 대한 比率는 加入期間이 20年이면 20%, 25年은 30%, 30年에 42%, 35年에 56%, 40年에 72%를 차지하여 加入期間에 따라 累進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0年加入者의 경우 이 報酬比例部分만으로도 年金額支給上限인 70%²⁰⁾를 초과하게 되어 均等部分에 의한 年金支給은 無意味하게 된다.

年金加入當時의 個人的 月報酬(WG_1)가 加入當時의 全勤勞者의 平均月報酬(W_1)와 같은 경우에 賃金上昇率과 加入年數에 따른 基本年金額의 水準을 算出하면 <表 7>과 같다. 즉, 年金加入期間이 20年이고, 全勤勞者平均賃金

引上率(r)과 個人的 賃金引上率(f)이 동일하게 15%일 경우 基本年金額은 最終3年間平均報酬의 42.9%가 되며 35年間 加入했을 경우는 78.9%로써 年金受給上限인 70%를 초과하게 된다.

基本年金額水準은 賃金引上率이 높을수록 增大되지만 個人的 賃金引上率이 平均賃金引上率보다 높을 경우는 같을 때보다 그 水準이 줄어든다.

한편 年金額水準은 均等部分에 의해 左右되어 報酬階層에 따라 差異가 생기게 된다. 즉, 報酬水準이 높을수록 基本年金額水準은 낮아지게 되는 반면 報酬水準이 낮은 階層은 加入期間에 따라선 年金額支給上限에 묶여 全額支給받지 못하는 결과가 招來된다(圖 1 참조).

이상과 같이 20年加入者의 경우 基本年金額水準이 最終3年間平均報酬의 40%정도에 불과하고 40年加入者는 全部 年金額支給上限에 묶이게 된다. 더우기 賃金上昇率이나 所得水準에 따라서는 20年加入한 경우 30%이하까지도 支給받게 되어 生活保障의 機能을 다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國際勞動機構(ILO)의 勸告²¹⁾나 各國의 給與水準을 고려하여 下限과 上限을 두어 調整·改善하여야 할 것이다. 즉, 年金額支給上限은 既存公的 年金制度의 退職年金上限인 76%이상으로 하되 加給年金額을 고려, 80%로 設定함이 바람직하고 高所得者의 年金水準이 낮은 점을 감안, 年金額의 下限을 35~40%정도로 設定하여야 高所得者의 不利益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加給年金額

年金受給權者中 減額老齡年金과 在職者老齡年金受給權者를 除外한 老齡·障害·遺族年金

<表 7> 最終3年間平均報酬月額(BS)에 대한 基本年金額(PE)의 比率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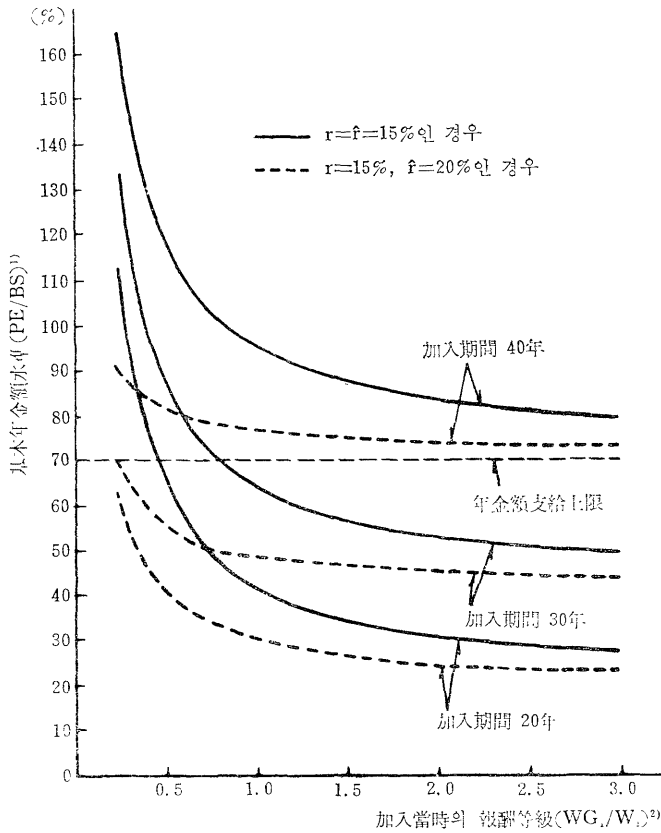
年間賃金上昇率		加入期間			
平均(r)	個人(f)	20年	30年	35年	40年
10	10	41.9	63.9	77.9	93.9
15	15	42.9	64.9	78.9	94.9
20	20	43.7	65.7	79.7	95.7
10	15	29.9	48.3	61.0	76.0
15	20	30.6	48.9	61.6	76.5
20	25	31.3	49.5	62.1	77.0

註: 加入當時의 全勤勞者平均報酬와 個人的 平均報酬가 동일한 경우이며, 本表의 數値는 實計算值로써 年金額支給上限인 70%를 고려하지 않았음.

20) 國民福祉年金法 第39條에는 老齡年金의 月支給額은 最終3年間의 平均報酬月額의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1) 基本的 廢疾 및 老齡給付는 受益者에게 被扶養者가 없을 경우 勤勞者賃金의 30%를 下廻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 『ILO勸告集(下卷)』, 立法參考資料 第73號, 1967, p.45).

[圖 1] 加入當時의 報酬等級別 基本年金額水準



註: 1) 基本年金額水準은 受給者의 最終3年間 平均報酬(BS)에 대한 基本年金額 (PE) 比率인.

2) 加入當時 全勤勞者 平均報酬(W₁)에 대한 加入當時 受給者報酬 (WG₁)의 比率인.

* r: 全勤勞者의 平均賃金引上率, f: 受給者個人의 賃金引上率.

의 受給權者가 扶養하는 配偶者와 18歲 미만 및 2級 이상 障害子女에 대해서는 月 2,000원 및 1,000원을 各各 年金額에 加算하여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²²⁾. 加給年金額은 家族手當의 一種으로 被保險者의 家族規模에 따라 扶養生計費를 補助하는 目的이 있으므로 年金受給權者에게는 모두 支給되어야 論理的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減額 및 在職者老齡年金受給權

者에게도 支給되어야 合理的이다.

加給年金額의 給與方法은 現制度와 같이 一定額으로 規定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物價上昇率이 높은 때에는 수시로 一定額을 變更해야 하는 不便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社會保障制度인 家族手當制度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家族數와 生活水準에 따른 定率制의 導入이 바람직하다. 例로서 配偶者에게는 基本年金額의 10%, 子女는 1人當 5%를 적용하는 方式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22) 國民福祉年金法 第27條 및 同 施行令 第14條 참조.

60歲 이상의 老齡年金受給權者는 실제로 配偶者단 혜택을 받게 되며, 단지 一部 障害子女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外國의 경우에도 加給年金은 扶養家族補助金(dependents' supplements 또는 means-tested allowance)으로支給되고 있으며, 定率制를 採擇하고 있는 國家가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다²³⁾.

다. 年金額의 實質價值維持

國民福祉年金制度는 加入者와 그 家族의 生活保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年金額의 決定時에는 加入終了後 受給年齡까지의 待機期間에 대하여 全勤勞者의 平均報酬月額이 20% 이상 變動한 경우 加入者의 最終3年間平均報酬를 法定調整하며²⁴⁾, 年金額決定 以後에는 國民의 生活水準·賃金·物價·其他經濟事情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 그 事情에 맞도록 調整·措置하도록 함으로써(法第4條) 年金

水準의 實質價值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基本年金額算定時 待機期間에 대한 法定調整方法은 最終3年間 平均標準報酬(所得)月額을 受給前年度의 全勤勞者平均報酬月額이 加入最終年度の 그것보다 20% 이상 變動된 때에 20~100%까지 5等級으로 나누어 加減토록 함으로써 그 待機期間에 따라서는 賃金變動이 100% 이상 초과될 수도 있고, 規定된 變動下限인 20%에 미달하는 경우(例로 19%)에는 그만큼 加入者에게 損害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法第26條 4項은 全勤勞者平均報酬의 變動率만큼을 그대로 적용하여 加入者의 受給前 最終3年間の 平均標準報酬月額을 算定토록하고 同 施行令 第13條 3項은 削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年金額決定後의 實質價值維持方法인 年金額調整基準은 國家마다 그 나라의 經濟·社會的 與件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

〈表 8〉 老齡年金의 種類

	受給資格要件			年金額算定方法
	加入期間	受給年齡 ¹⁾ (歲)	退職條件	
老齡年金	20年 이상	60(55)	退職後	基本年金額(PE)+加給年金額(AP)
減額老齡年金	10年 이상 20年 미만	60(55)	退職後	$PE \cdot \left\{ \frac{45}{100} + \frac{5(n-10)}{100} \right\}^{2)}$
在職者老齡年金	20年 이상	60(55)	勤勞中	$PE \cdot \left\{ \frac{40}{100} + \frac{10(X-60)}{100} \right\}^{3)}$ 단, $60 \leq X \leq 64$
在職者老齡年金	10年 이상 20年 미만	65(60)	勤勞中	減額老齡年金과 동일
特例老齡年金	(492-8XM)個月 ⁴⁾ 단, $40 \leq XM \leq 54$	60(55)	退職後	$PE \cdot \left\{ \frac{260-4XM}{100} \right\} + AP^{4)}$ 단, $40 \leq XM \leq 53$

註: 1) () 안 年齡은 女子와 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임.

2) n은 加入年數임.

3) X는 受給時年齡이며, 65歲 이상者는 老齡年金額과 동일함.

4) XM은 特例老齡年金의 加入年齡(40歲 이상 55歲 미만者)이며, 女子와 特殊職種勤勞者는 35歲 이상 50歲 미만者가 加入對象年齡이므로 이들에게는 5歲를 加算하여 適用하여야 함. 그리고 54歲의 年金額은 0.45PE가 됨.

2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C.: May 1980.

24) 國民福祉年金法 第26條 第4項 및 同 施行令 第13條 第3項 참조.

우에는 名目賃金引上率이 物價上昇率을 앞질러 왔으며²⁵⁾, 既存의 公的 年金制度가 賃金引上率을 反映하고 있으므로 制度의 衡平上 全勤勞者의 平均賃金引上率을 기준으로 自動調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給與範圍

가. 老齡年金

國民福祉年金의 基本的인 給付種類인 老齡年金은 <表 8>과 같이 4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老齡年金은 加入期間, 受給資格年齡, 退職與否에 따라 年金額이 決定되나 減額과 在職者老齡年金에는 上述한 바와 같이 加給年金額을 除外하고 있다.

加入期間要件은 年金財政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데 그 期間이 짧으면 年金受給者가 早期에 急增하게 되어 年金財政을 不安하게 할 것이며 加入期間이 길게 되면 財政面에는 安定을 期할 수 있으나 反面에 加入者의 損益面²⁶⁾에서는 不利해질 수 있다. 이 法의 加入期間은 20年(240個月)을 基準으로하여 10年(120個月)부터 年金을 支給하도록 되어 있어 年金財政面이나 被保險者의 收益面에서 妥當하다고 評價된다. 특히 先進國의 경우 加入期間은 <表 9>와 같이 0~240個月로 多樣하나 180個月(15年)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老齡年金의 特例(法 附則 3條)는 制度施行時 資格期間을 充當할 수 없는 對象者中 40歲 이상 55歲 미만者(단, 女子와 特殊職

<表 9> 先進諸國의 老齡年金 資格期間現況

(단위: 個月)

國 名	最少資格期間	國 名	最少資格期間
브라질	60	日本	240
덴마크	36	캐나다	0
西獨	180	노르웨이	36
프랑스	180	필리핀	60
英國	0	스페인	120
이탈리아	180	터키	180
美國	18~120		

資料: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The Influence of Early Pensions, of Deferred Pensions and of Continuation of Work on the Old-Age Pensions*,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VIII, Geneva, 1978, pp. 62~65.

種者는 35歲 이상 50歲 미만)는 年金加入期間이 5年~14年 4個月만 되어도 資格要件은 充當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特例老齡年金의 加入期間(y)은 加入當時의 年齡(x)에 따라 $y=492-8x(40 \leq x \leq 54)$ 의 期間만 加入하면 基本年金額의 $(260-4x)\%(40 \leq x \leq 53)$, 단, $x=54$ 인 경우는 45%)를 支給하고 여기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40歲 미만의 加入者나 制度實施이후 加入한 40歲 이상者가 減額老齡年金을 受給할 때와 競合하게 되어 減額老齡年金受給者는 加入期間이나 給與되는 年金額에서 隔差가 심하게 된다. 더욱이 後者는 加給年金額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表 10>과 같이 그 隔差는 더욱 극심하게 된다. 따라서 特例老齡年金은 減額老齡年金受給者의 資格基準이나 加入期間 및 年金額水準에서 差異가 생기게 되므로 이 制度는 一元化하고 特例條項은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즉, 40~49歲(女子는 35~44歲)까지는 60歲까지 繼續加入하면 減額老齡年金을 受給할 수 있는 適用對象者이기 때문에 이들은 除外하고 60歲까지 加入하여도

25)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26) 被保險者의 損益分析은 Ⅲ章 2節 참조.

〈表 10〉 特例老齡年金과 減額老齡年金的 比較

加入年齡	特例老齡年金		減額老齡年金	
	加入期間 (年)	年金額 ¹⁾	加入期間 (年)	年金額 ¹⁾
50歲	7 $\frac{2}{3}$	60% + AP	10	45%
48	9	68 + AP	12	55
46	10 $\frac{1}{3}$	76 + AP	14	65
44	11 $\frac{2}{3}$	84 + AP	16	75
42	13	92 + AP	18	85
40	14 $\frac{1}{3}$	100 + AP	20	100

註: 1) 年金額은 基本年金額에 대한 比率이며 AP는 加給年金인.

減額老齡年금을 受給할 수 없는 50歲(女子 45歲) 이상者에 대해서는 既存公的年金制度에서 實施했던 바와 같이 加入資格期間을 遡及適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遡及期間을 認定할 경우 잠정적으로 5~10年前까지만을 認定하여 每月 年金寄與金の 2倍 혹은 그 이상을 釀出토록 하여야 하며 10年 이상의 期間을 充足하면 減額老齡年金 支給方法에 따라 給付토록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이렇게 하여도 資格期間을 充足할 수 없을 때에는 返還一時金を 支給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年金額決定時 自營者 등을 除外한 被傭者는 退職을 資格要件으로 하고 있는데 非共產圈의 任意選定한 100個國을 調査한 資料에 의하면 退職해야만 受給資格을 賦與하는 國家는 69個國으로 退職에 관계없이 資格을 賦與하는 31個國보다 約 2倍나 되었다²⁷⁾. 그러나 이 制度에서는 在職者老齡年金에만 退職要件과 關係없이 年金을 支給하고 64歲까지는 基本年金額

의 40~80%를, 65歲 이상은 100%를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年金制度의 目的이 最低生活保障에 있으므로 一定所得의 就業者를 給付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으나 政府의 福祉政策的 側面에서 老齡者의 就業을 促進하고 그들의 所得水準은 靑壯年勤勞者보다 낮을 것이라는 點을 감안할 때 이 制度는 계속 存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障害年金

障害年金²⁸⁾은 1年 이상 加入한 者가 疾病이나 負傷으로 不具가 되었을 때 初診日로부터 2年 經過日(단, 이 期間안에 障害程度가 確定될 경우는 確定日)의 障害程度에 따라 1級은 基本年金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支給하며 2級과 3級은 基本年金의 50%와 30%에 加給年金額을 각각 加算支給한다.

이 制度의 目的은 不具·廢疾로 인하여 肉體的 또는 精神的으로 正常的인 勤勞活動을 할 수 없는 加入者를 經濟的으로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써 勤勞能力의 減少程度(reduction of capacity for work), 評價되는 所得水準(accountable income), 被傭期間(duration of employment)를 考慮하여 受給資格을 賦與하고 年金額을 支給하는 것이 通常이다²⁹⁾.

그러나 現行 醫療保險法(30條)에 의하면 療養給與期間을 6個月 이내로 限定하고 있어 그 이상의 治療를 要하는 慢性病系統患者의 경우는 6個月 이후의 醫療費負擔이 困難하게 된다. 더욱이 이 制度에서도 障害年金은 2年이 경과한 후에야 支給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疾病이 進行中인 患者의 경우 6個月 내지 2年間의 生計保障이나 醫療保障對策이 없게 된다. 또한 이 法은 業務上이나 業務外의 廢疾區分없

27)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C.: May 1980.

28) 國民福祉年金法 42條 및 43條 참조.

29) K. Palotal, *Problems Arising from the Low Level of Invalidity Pensions*,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X, Geneva: ISSA, 1978, pp.2~4.

이 1년이상 加入하게 되면 受給資格要件을 充當하도록 되어 있으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種의 경우 同一한 資格要件으로 同種의 年金額을 二重支給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國家가 運營하는 所得保障制度에서 二重支給하는 것은 所得保障目的에 위배되므로 受給權者가 兩者中 有利한 것을 選擇하게 하여야 한다.

勤勞能力이 없는 障害者(1級)의 경우 당연히 退職이 前提되면서 基本年金額의 100%와 加給年金額이 加算支給 된다. 그런데 障害年金額의 對象者는 老齡年金受給者와는 달리 젊은 年齡階層이 많아 扶養家族이 相對的으로 많고 生計費支出도 크다. 더우기 障害의 治療·再活 등을 위한 過重한 醫療費가 必要하기 때문에 老齡年金額과 같은 水準의 給與를 支給하는 데는 問題가 있다. 그러나 障害年金額에는 年金額의 上限規定이 없어 現行 基本年金額 計算方法으로는 低所得者일수록 本人의 最終賃金水準보다 年金額이 많을 수 있고 高所得者에게는 별로 惠澤이 없다. 따라서 障害年金制度에서는 日本이나 西獨과 같이 基本年金額의 125% 이상을 支給할 수 있게 하던가 介護費를 別途로 支給할 수 있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級 및 3級 障害年金額은 基本年金額에 대한 一定比率을 適用支給하도록 되어있는데 醫療費의 追加支出을 감안 2級障害者의 경우 老齡年金額과 同一水準으로 하고 3級の 경우에는 20% 정도를 上向調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法에서는 3個障害等級에 34個項目으로

障害基準을 設定하고 있으나 等級設定基準은 再檢討하여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級の 경우 完全勞動不能狀態者로서 常時 介護를 要하게 되나 規定에는 兩眼의 視力이 0.02이하 者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狀態에서는 眼鏡을 着用함으로써 勤勞에 參加할 수 있으며, 2級の 경우 上肢의 외관적 이상을 잃은 者일지라도 義手足을 着用할 경우 高度의 勞動障害를 입은 狀態로는 보기가 어렵다. 또한 1種加入者의 경우 産災保險의 障害補償給與와 障害年金額이 重複되나 等級基準이 相異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相異한 受給權을 認定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制度의 障害等級基準은 産災保險의 障害補償給與等級基準과 調整할 必要가 있으며 障害等級基準設定의 合理化를 위하여 專門醫로 構成된 諮問委員會의 構成이 必要할 것이다.

다. 遺族年金

遺族年金額³⁰⁾은 1년이상 10년미만 加入者가 死亡時 基本年金額의 40%, 10~20년은 45%, 20년이상은 50%를 支給하고 加給年金額을 加算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遺族의 範圍(法 48條)에는 配偶者, 18歲 미만의 子女 또는 孫子女, 60歲 이상의 父母 또는 祖父母 그리고 2級이상 障害者가 包含되어 있다.

이 制度는 年金加入者가 所得의 源泉者로서 死亡時 그에 의하여 扶養하던 家族의 生活을 保護하는 데 目的이 있다. 따라서 加入者의 死亡時期, 加入期間에 따른 差等年金額, 遺族의 範圍, 年金額의 水準 등은 우리나라 家族制度, 傳統文化 등의 社會的 背景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加入者의 死亡時期로 볼 때 一般的으로 加入

30) 國民福祉年金法 47條 및 49條와 同施行令 18條 참조.

期間이 긴 경우보다 짧은 경우 加入者의 年齡層이 젊고 年金額은 加入期間에 따른 差等給付보다 扶養家族數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合理的이다. 따라서 이 制度에서는 年金額을 加入期間과 관계없이 一律적으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給付水準은 公務員이나 軍人年金額과 같이 最少限 基本年金額의 50%에 加給年金額을 合算하여 支給하는 것이 制度間的 均衡을 維持할 수 있다.

또한 被傭者(1種)인 경우에는 障害年金의 경우와 같이 產災保險과 重複될 수 있으므로 兩制度中 有利한 것을 擇一할 수 있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또한 核家族化가 進行되고 老齡人口의 各種 福祉對策이 推進되고 있으므로 祖父母나 孫子女에게까지 遺族의 範圍를 擴大하는것보다 外國의 경우와 같이 未亡人年金(widow's pension)이나 孤兒年金(orphan's pension) 등으로 年金保護가 必要한 階層에게 惠澤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返還一時金

이 法³¹⁾에서는 加入者가 年金을 受給할 수 있는 法定要件에 未達할 경우 返還一時金を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年金加入期間이 10年 미만인 者로서 60歲(女子와 特殊職種者는 55歲)에 達한 후 加入資格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加入資格喪失後 加入者로 되지 아니하고 60歲(55歲)에 達한 때와 1年미만 加入者가 死亡한 때 支給하되, 女子의 경우는 年金加入期間에 관계없이 脫退한후 1年이 경과하면 返還一時金を 申請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返還一時金(*TRIL*)은 加入期間동안 納入한 寄與金總額(*TW*)에 基本率(α) 및 制別加算率(β)을 적용하여 支給하며, 加入資格喪失後 返還一時金受給까지의 待機期間에 따른 利子率(δ)을 合算하여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施行令 第19條). 즉, $TRIL = \alpha \cdot (\beta + \delta) \cdot TW$ 이 된다.

여기서 納入寄與金總額(*TW*)은 加入當時의 賃金(WG_1), 本人負擔保險料率(\hat{k}), 賃金上昇率(\hat{r}) 및 加入期間(n)에 따라 변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TW = 12 \cdot \hat{k} \cdot WG_1 \cdot \sum_{j=1}^n (1 + \hat{r})^{j-1}$$

그래서 返還一時金은 다음과 같다.

$$TRIL = \alpha \cdot (\beta + \delta) \cdot 12 \cdot \hat{k} \cdot WG_1 \cdot \sum_{j=1}^n (1 + \hat{r})^{j-1}$$

그런데 年金加入者가 納入한 寄與金を 利子率(i)을 적용하여 年間福利로 計算한 退職當時의 元利金合計(*INWT*)는,

$$INWT = 12 \cdot \hat{k} \cdot WG_1 \cdot \sum_{j=1}^n (1 + \hat{r})^{j-1} (1 + i)^{n-j}$$

가 된다.

年金制度는 社會保險的 性格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返還一時金制度는 최대한 制限하고 年金으로 支給할 수 있도록 誘導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狀況下에서는 女性의 離職率이 높고 企業(특히 中小企業)의 職場不安定, 自營業希望者가 많은 就業構造와 社會保障諸制度가 未備하므로 貯蓄性金利만큼은 返還해 주어야 國民이나 各利益團體의 迎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返還一時金(*TRIL*)을 元利金(*INWT*)과 동일하게 한다는 前提下에서 制度를 마련한다면 法定加算

31) 國民福祉年金法 第56條 및 第37條 4項 참조.

〈表 11〉 返還一時金の 加算率과 利率

(단위 : %)

加入期間 및 待機期間	現行 加算率			待機期間 0인 $\alpha(\beta+\delta)$	現行의 利率(%) ³⁾		利率 20%인 경우 의 加算率 ⁴⁾	
	基本率 (α) ¹⁾	特別加算率 (β) ¹⁾	待機期間利 子率 (δ) ²⁾		$\alpha(\beta+\delta)$	α	$\hat{r}=0$	$\hat{r}=15$
0 年	1.00	—	1.00	1.000	—	—	1.000	1.000
1	1.00	—	1.06	1.000	—	—	1.100	1.093
2	1.03	0.03	1.12	1.061	12.2	6.0	1.213	1.193
3	1.06	0.05	1.19	1.113	11.0	6.0	1.342	1.300
4	1.09	0.10	1.26	1.199	12.3	5.9	1.488	1.415
5	1.12	0.16	1.34	1.299	13.1	5.7	1.655	1.538
6	1.15	0.22	1.42	1.403	13.5	5.6	1.845	1.668
7	1.18	0.28	1.50	1.510	13.6	5.5	2.062	1.808
8	1.21	0.34	1.59	1.621	13.5	5.4	2.311	1.956
9	1.24	0.40	1.69	1.736	13.3	5.3	2.596	2.114
10	1.27	0.46	1.79	1.854	13.2	5.2	2.923	2.282
15	1.44	0.76	2.40	2.534	12.2	5.0	4.802	3.056
19	1.58	1.00	3.02	3.160	11.5	4.8	8.144	4.017

註 : 1) 加入期間에 의한 算定率.

2) 待機期間(加入資格喪失後 返還一時金支給時까지의 期間)에 의한 率.

3) 待機期間이 0이고 賃金上昇이 없는 경우, 加入者의 損益分岐點(TRIL=INWT)이 되는 現行制度의 利率.

4) 利率이 20%이고 賃金上昇率(\hat{r})이 0% 및 15%일 때 加入者의 損益分岐點이 되는 返還一時金の 加算率 適用值.

率인 $\alpha(\beta+\delta)$ 는 다음과 같이 計算되어야 한다.

$$\alpha(\beta+\delta) = \frac{\sum_{j=1}^n (1+\hat{r})^{j-1} (1+i)^{n-j}}{\sum_{j=1}^n (1+\hat{r})^{j-1}}$$

이 公式를 이용하여 現行法規에 규정된 返還一時金 加算率의 年間利率(i)을 20%로 유지하여 返還一時金を 支給할 경우의 加算率을 計算하면 〈表 11〉과 같다. 즉, 賃金上昇이 없을 경우 現行의 返還一時金加算率은 年利 11.0~13.6%의 利率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利率은 貯蓄性銀行金利에 미달된다. 더우기 特別加算率(β)이 적용되지 않는 10年 미만 加入女子의 경우³²⁾와 5年 미만의 男子加入者의 경우는 5~6%의 利率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利率이 더욱 낮다. 따라서 現制度의

返還一時金은 男性과 女性의 支給要件과 給付 方法을 改正하여 10年 미만의 加入者가 脫退할 때는 銀行金利의 水準을 支給하도록 하고, 10 年 이상의 女子의 返還一時金은 減額年金으로 代替해야 할 것이다. 또한 遺族年金을 받는 경우 死亡者에 대한 葬祭手當이 없기 때문에 喪事 年金을 受給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葬祭 費에 所要되는 費用을 一時金으로 支給할 수 있도록 制度가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Ⅳ. 關聯制度와의 調整

1. 現行退職金制度

國民福祉年金制度를 실시하게 되면 使用者

32) 55歲에 達하기 前에 返還一時金を 受給할 경우에 한 한다.

인 企業의 立場으로는 勤勞基準法 第28條에 의한 現行退職金制度와 새로운 年金制度로 負擔金이 加重하게 되므로 兩制度를 統合하여 負擔金을 輕減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現行退職金制度는 企業의 單獨負擔으로 그 負擔率(報酬의 8.3%)이 너무 높아 經營壓迫要因이 되고 있으며, 運營規定이 未備하여 충분한 支給保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社會問題까지도 유발하고 있다³³⁾.

이와 같이 企業側으로는 退職金制度를 社會保障의 性格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退職金負擔을 감소시키려는 反面, 勤勞者側은 長期勤績의 功勞補償과 賃金後拂로 보기 때문에 兩制度의 성격상 調整되지 않기를 강력히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年金制度는 社會保障制度이고 現行退職金制度는 勞使間의 勤勞條件의 하나이므로 年金制度와는 別個로 운영하되 退職金自體의 問題點을 改善해 나가는 방향으로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즉, 現行의 強制適用方式을 勞使合意에 의한 自律的인 調整方法으로 유도하고, 社內에 留保되고 있는 退職給與充當金을 社外留保로 轉換시키는 制度的 裝置(金融 및 稅制惠澤 등)를 마련하여 이를 基盤으로 私的 年金制度인 企業年金으로 誘導함이 妥當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企業負擔能力을 감안 年金制度와 결부시켜 退職金을 조정하게 될 경우 退職金의 支給方法, 支給率 등이 再檢討되어야 한다. 즉, 年金制度의 적용을 받게될 事業場의 既存退職

金制度는 受給權者의 要請時 中間清算을 할 수 있게 하거나, 企業의 支給能力이 없을 때에는 政府가 保障하는 株式을 포함한 現物 또는 現金으로 分割支給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年金制度의 적용을 받게될 事業場의 被保險者가 희망할 경우 退職金의 年金化를 인정하던가, 企業側의 負擔을 고려하여 年金負擔金(3%)만큼을 감소하여 退職金負擔을 8.3%에서 5.3%(退職金支給을 30日分에서 23日分)정도로 감소시키는 것 등의 代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現行退職金制度는 長期的 政策方向으로서 自律的制度로 유도하여야 하나 現段階에서는 兩制度가 當分間 並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와의 受給權 調整

國民福祉年金制度의 遺族 및 障害年金과 産災保險의 遺族補償 및 障害補償年金과는 受給資格要件이 類似하고, 兩制度에서는 이를 規制하는 條項이 없기 때문에 兩面으로 支給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兩制度는 國家가 運營하는 社會保障制度로서 동일한 支給事由로 年金을 2重으로 支給한다는 것은 最低生計費保障이라는 所得保障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調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現行 産災保險의 障害補償이나 遺族補償年金은 國民福祉年金法의 障害나 遺族年金보다도 給與水準이 높기 때문에³⁴⁾ 國民福祉年金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妥當하다. 그러나 兩制度間의 支給方法이 相異하고(産災에서는 一時金도 支給) 給與水準은 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受給權者가 擇一할 수 있도록 制度를 補完

33) 閔載成, 「年金制度와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方向」, 『韓國開發研究』, 第2卷 第3號, 1980, pp. 113~130.

34) 例로 産災保險의 障害補償年金額은 報酬의 76.4%(1級)~60%(3級)인데 비해 國民福祉年金의 障害年金은 基本年金額(報酬의 40%內外)의 100%(1級)~30%(3級)에 해당된다.

하여야 할 것이다.

3. 特殊職域年金制度와의 通算

既存公的 年金(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員 年金)인 特殊職域年金制度와는 별도로 國民福祉年金制度가 導入되었기 때문에 各制度의 加入者가 移動時에는 兩制度間의 通算問題가 擡頭된다. 그런데 特殊職域年金制度는 退職을, 國民福祉年金制度는 老齡을 근간으로 受給資格을 賦與하고 있어 성격상 通算이 어렵게 되어 있다. 즉, 前者는 退職金制度和 年金制度를 동시에 적용하여 保險料率(總 11%)이 높고, 주로 一時金形態로 운영되고 있으며, 年金支給方法도 報酬比例方法만을 적용하므로 後者와는 큰 차이가 있어 年金加入期間 및 支給方法 등의 通算이 어려운 課題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앞으로 公共機關과 企業의 勞動移動이 많아지고 國民皆保險이 이루어지는 段階가 될 때는 그때의 社會·經濟的 與件에 따라서 通算問題가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結論 및 建議

1) 1973년에 制定된 國民福祉年金法에 의하면 18歲미만의 加入者는 適用對象에서 除外하게 된다. 만약 이 法이 施行된다면 1980年을 基準으로 할때 全事業場被傭者의 2.8%만을 除外시키게 된다.

全勤勞者의 性比(男:女)는 63:37이나 18歲미만은 20:80이고 全女性勤勞者의 75.4%가 24歲미만으로 年少勤勞者의 대부분이 女性

이다. 특히 이들의 所得水準은 全勤勞者平均賃金의 50%水準으로 매우 낮으며 24歲 이상 의 女性은 대부분 結婚으로 인하여 離職率이 높다.

한편 外國의 年金保險制度는 事業場이 適用되면 모든 被傭者는 自動적으로 加入되나 自營業者나 地域住民은 社會的 背景이나 所得能力을 考慮하고 있다.

따라서 이 法의 1種(被傭者)은 年齡, 所得의 制限없이 全員을 加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2種의 경우에만 加入年齡을 勤勞基準法의 保護年齡인 14歲이상으로 하고 學生이나 軍服務者들은 適用除外하여야 할 것이다.

2) 1973年の 法에서는 制度가 實施될 때 55歲 이상者는 加入對象에서 除外되고 있으나 加入期間을 充當할 수 없다는 理由만으로 除外시키는 것은 이 制度가 全國民의 所得保障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不合理하다. 따라서 國家財政으로 充當할 수 있는 範圍 안에서 最低生計費水準의 定額年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方案을 模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國內居住外國人에게 制度를 適用하는 問題는 2種의 경우 適用與否를 明文化하지 않음으로써 海外居住 韓國人의 權利를 保護하지 못하고 있다. 各國에서는 國家間의 相互協定에 의해서 適用하여 惠澤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制度的 補完이 필요하다.

4) 이 法은 30人이상 規模의 事業場에 強制適用하도록 되어 있으나 行政組織이 未備하고 現行 醫療保險制度에서도 100人이상 的 事業場을 對象으로 實施하고 있으므로 이 制度는 實施可能한 規模의 事業場被傭勤勞者로부터 시

작하여 段階的으로 全國民에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特殊職種者는 坑內鑛夫, 船員, 航空塔乘者로서 女子와 同一하게 55歲에 受給資格을 賦與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特殊職勤務期間, 身體檢査結果 등이 受給資格要件에 追加되어야 할 것이며, 所得水準이 높은 航空塔乘者의 特殊職種賦與는 類似職種과의 均衡維持와 先進國의 經驗 등으로 보아 除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1種加入者의 釀出料는 月報酬의 5~7% 이고 2種加入者는 月 900원이상을 定額 釀出토록 하였으나, 이 法의 年金算定方法으로 老齡年金을 基準한 被保險者의 損益分析結果에 따르면 利子率 20%, 賃金引上率 10%인 경우 20年加入者의 損益分岐點은 4.2%, 30年加入者는 2.4%로 推定된다. 그런데 釀出料率에는 本人과 使用者가 分擔하게 되므로 이의 2배까지도 釀出料率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釀出料率은 個人的 損益 뿐만 아니라 企業의 負擔能力, 年金財政의 收支均衡에도 영향을 주지않는 範圍內에서 決定되어야 하기 때문에 3~4% 수준에서 決定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比例部分의 最終3年間平均報酬月額에 대한 比率는 加入期間이 20年이면 20%, 30年 42%, 40年 72%로 累進的으로 增加하여 40年의 경우 年金額支給上限인 70%를 초과하게 되며 年金額水準은 賃金上昇率이 높을수록 增大한다. 따라서 基本年金額은 所得水準에 따라서 20年加入者는 報酬의 30% 이하까지도 支給받게 된다. 그러므로 年金額의 上限은 80%

까지 조정하고 高所得者의 不利益을 最小限으로 保障할 수 있도록 年金額의 下限을 35~4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加給年金額은 家族手當의 一種으로 扶養家族의 生計費를 補助하는 目的이 있으므로 減額 및 在職者老齡年金 受給權者에게도 支給되어야 合理的이며 物價上昇率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行政의 便宜上 基本年金額에 加算率(例, 配偶者 10%, 子女1人當 5% 등)을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年金額의 實質價値를 유지하기 위한 調整方法으로 年金額決定時 待機期間에 대해 平均報酬月額이 20% 變動할 때 마다 100%까지 5等級으로 平均標準報酬月額을 調整하게 되어 있으나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도 變動될 수 있으므로 受給前平均報酬月額의 變動率만큼을 그대로 調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名目賃金引上率이 物價上昇率보다 높고 公的 年金制度가 賃金引上率을 反映하고 있으므로 制度의 衡平上 全勤勞者의 平均賃金引上率을 基準으로 年金額이 自動調整되도록 制度를 補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老齡年金의 特例에 의한 40歲이상 55歲(女子와 特殊職種者는 35歲 이상 50歲) 미만은 5年~14年4個月만 加入하면 受給資格을 賦與함으로써 減額老齡年金과 重複適用될 뿐 아니라 給與水準이 심한 隔差를 나타내는 矛盾이 있다. 따라서 이 法의 特例老齡年金은 減額老齡年金과 一元化하고 그 대신 適用除外되는 高齡要救護者(例 65歲이상)에게 最低生計費를 定額給付할 수 있는 制度를 發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障害年金의 廢疾認定時期를 初診日로부터 2年(단, 確定時는 例外)으로 規定한 것은 現行醫療保險의 療養給與期間이 6個月로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6~24個月사이의 長期 疾患者들에게 問題가 되므로 兩制度를 調整할 必要가 있다. 또한 障害年金은 現行 産災保險의 障害補償年金과 競合되므로 受給者의 希望에 따라 擇一할 수 있는 選擇權을 부여하고, 兩制度의 障害等級基準, 給與水準 등을 均衡 있게 發展시킬 수 있는 對策이 바람직하다.

12) 年金加入者가 死亡할 때 그 遺族의 生計保障을 目的으로하는 遺族年金을 加入期間에 따라 差等支給하는 것은 遺族들의 所得保障目的에 위배되므로 給與基準을 一律적으로 하고 公務員이나 軍人年金과 같이 基本年金額

의 50%에 加給年金額을 合算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障害年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産災保險의 遺族給與와 競合되므로 選擇權을 賦與하는 것이 妥當하다.

13) 年金制度는 社會保險制度이므로 返還一時金制度는 加급적 制限하여야 하나 社會的 與件이나 부득이한 中途脫退者를 위한 返還一時金制度는 存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法의 返還一時金制度는 對象의 重複, 算定基準의 矛盾, 多様な 給與支出方法 등으로 결함이 많으므로 10年 미만者에게 醜出料總額에 貯蓄性銀行金利를 감안하여 返還하고, 女性의 結婚退職時에는 加算金을 支給토록 하며 死亡者에 대한 葬祭費가 追加로 設置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_____, 「1978~1979 韓國人の 生命表」, 1980.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ILO勸告集(下卷)』, 立法參考資料 第73號, 1967.
勞動廳, 『事業體勞動實態調查報告書』, 1980.
_____,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0.
閔載成, 「年金制度와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方向」, 『韓國開發研究』, 第2卷第3號, 113~130, 1980.
_____, 「社會保障」, 『國家豫算과 政策日標』, 韓國開發研究院, 1981.
韓國開發研究院, 『第5次 5個年計劃作成을 위한

經濟社會政策協議會: 討議資料 및 內容』, 1980. 9.
韓國經營者協會, 『企業停年制의 現況』, 1979.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厚生の指標(特集號)』, 第26卷 第13號, 1979.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Gradual Transition from Full-time Work to Retirement, with Income Deriving in Part from Work and in Part from a Reduced Pension*,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IX, Geneva, 1978.
_____, *The Influence of Early Pensions, of Deffered Pensions and of Continuation of Work on the Old-Age Pensions*, XIXth

- General Assembly, Report VIII, Geneva, 1978.
- K. Palotal, *Problems Arising from the Low Level of Invalidity Pensions*,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X, Geneva : ISSA, 1978.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Washington, D.C. : May 1980.